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6일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8) 상정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8) 원안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가. 제안이유

- 「도서관법」의 일부개정(법률 제9528호, 2009. 3. 25. 공포 · 2009. 9. 26. 시행)에 따른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적시에 정비하여 법규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문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보완 · 정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 조문에 맞는 목적 및 정의규정을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있음

나. 반대토론

없음 있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를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부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종이상”을 “3종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3이내”를 “3 이내”로 하며,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 “관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21호
의결 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도서관법」의 일부개정(법률 제9528호, 2009. 3. 25. 공포·2009. 9. 26. 시행)에 따른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적시에 정비하여 법규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문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조문에 맞는 목적 및 정의규정을 개정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를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부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종이상”을 “3종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3이내”를 “3 이내”로 하며,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 “관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수집 보존된 도서자료 및 시설을 공중에 열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부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p>

<관계 법령발췌서>

○ 도서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